

[WEB 가이드] 선적 제한 사항 (수출)

부킹 품목 (Commodity) 제한

FAK(Freight All Kind) 화물의 정의와 NOR 선적 금지 품목을 아래에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

[Commodity Information of Hapag-Lloyd Tariffs](#)

운임 적용기준 (Tariffing Date/TD)

- Non FMC 화물: 부킹 시점의 ETD
- FMC 화물: 해당 부킹의 마지막 컨테이너 반입일 기준

선하증권 조항 및 서류 제한

- B/L 상 표기 불가 문구: Clean On Board, Cargo value, 특정 터미널 명칭
이 외에 도착지별 표기 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업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1 Container with Multiple shippers 로 B/L 발행 불가하니 SR 제출 시 유의하여 전송 바랍니다.
- Shipped On Board date 란 선하증권(B/L) 상 명시되는 모선 출항 일자입니다. 규정 상 어떠한 경우에도 백데이트는 진행 불가합니다.

SPECIAL PRODUCT

1. 위험물(DG) : MSDS, DGD(Multimodal) 또는 DG Certificate(과거 동일한 아이템으로 선적된 써티도 가능)을 부킹 접수 당일에 당사 업무팀으로 부킹 번호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.

2. Special product

하기 품목 진행하시는 경우, 사전 승인을 위해 부킹 완료 후 당사 업무팀으로 부킹 번호와 함께 승인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. 사전 승인되지 않은 특수 화물일 경우, 부킹 컨펌 시트 전송 여부와 관련 없이 선적 불가합니다.

- ① STEEL, COIL 및 고중량 금속재질
- ② Charcoal, Carbon Black, Carbon, Cigarettes, Flexitank (Flexibag)
- ③ 자동차 완제품(중고차/신차), 중고차 부품(엔진/배터리)
 - 자동차 완제품은 Class 9 / UN no.3166 으로 분류됩니다.
 - 배터리를 분리하고 연료 및 윤활유를 빼낸 후 진행하는 경우에는 IMDG code 의 Special Provision 961 에 해당하여 별도의 위험물 서류 제출 없이 선적 진행 가능하나, LOI 제출은 필수입니다.

- 그밖에 비 위험물의 경우, 당사 업무팀과 확인을 요하며 운송 중 기름 유출이나 적재 사고 시, 컨테이너 내부 적재 사진 및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 중고차 신고 건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운항상의 비용은 화주 귀책으로 간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④ BATTERIES

⑤ SCRAP

⑥ Used House hold

⑦ Military

⑧ SANCTION 지역 수출 부킹

- Shipment from/to Venezuela, Cuba, Iran, North Korea, Sudan or Syria are under United States of America(U.S) trade sanctions (OFAC embargoed shipments)
- OFAC 국가로 수출 예정인 화물은 직접 무역상 거래 제한 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 후 부킹 진행 바랍니다.
(www.treasury.gov)

3. Reefer 컨테이너

- Reefer PTI 요청은 근무일 기준 픽업(반출) 5 일 전 당사 업무팀으로 정확한 정보가 접수되어야 하며, 5 일 미만 접수의 경우 장비 문제로 진행이 불가합니다.
- PTI 접수 이후 부킹 캔슬 시, 부킹 취소료 이외에 터미널 측에서 별도로 PTI 캔슬 비용 부과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
4. OOG & In Gauge

- OOG 부킹 접수 시 정확한 Dimension 정보 입력되지 않은 경우, 부킹 자동 캔슬 처리됩니다.
- In Gauge 부킹 접수 시 부킹 Remark 란에 In Gauge 표기 및 Dimension detail 기입 바랍니다.
- 선적서류 마감 이후 dimension 변경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, 선적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OOG, In Gauge 컨테이너는 픽업 3 일 전 별도 요청 바랍니다. 늦은 요청 시 진행이 불가합니다.

컨테이너 규격

컨테이너별 규격/적재 가능 중량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Container Dimension / Weight Limitation

과적 제한 (Road Limitation)

일정 기준을 초과한 화물차량은 대한민국 도로법상 별도 운행허가가 필요합니다.

(기준: 길이 16.7m, 너비 2.5m, 높이 4.0m(또는 4.2m), 축하중 10 톤, 총중량 40 톤)

트럭, 트레일러, 컨테이너의 자체 중량과 화물 중량을 모두 합쳐 40.0 MT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각 축의 하중은 10.0 MT 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 높이의 경우 도로에서는 4.2m, 철로에서는 3.0m 가 제한입니다.

상기 정보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, 하파그로이드 코리아의 고객 서비스 팀 (Korea@service.hlag.com)에 문의하세요.